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

의안 번호	245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6. 30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개정이유

중구 공공도서관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도서관 강좌에 대해 수강료 유료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징수 규정 신설(안 제18조)
 - 수강료 기준: 정기강좌 월 3만원 이하, 특별강좌 회 1만원 이하(안 별표2)
- 나. 수강료 감면 및 반환규정 신설(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3까지)
- 다. 강좌 운영범위 구체화(안 제28조)
 - 독서강좌 → 독서강좌,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로 구체화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대비표: 따로 붙임

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60 (제275회-행정자치위제1차부록)

가. 「도서관법」 제48조

- 이용료에 관한 사항 규정

나. 「도서관법 시행령」 제34조

- 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 규정

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평가: 개선사항 없음(가족복지과-23304호, 2025. 6. 2.)

라. 입법예고: 2025. 5. 26. ~ 6. 16.(21일간) / 의견 없음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(이하 “수강료”라 한다)

단,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.

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의2(수강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자가 감경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.

1. 100분의 50 경감

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
- 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
- 다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

2. 100분의 20 경감

- 가. 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

- 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항에 따른 다자녀가정
- 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

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제18조의3(수강료의 반환) ①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2. 도서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: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3. 수강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: 납부한 수강료 전액
- 4.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: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
- 5.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: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

6.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: 미반환

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. 이 경우 반환 신청서 제출일을 반환 사유 기준일로 하며,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독서강좌”를 “독서강좌,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”로 한다.

별표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수강료

구 분	기준금액	비 고
정기강좌	월 3만원 이하	○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 ○강좌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특별강좌	회 1만원 이하	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8조(이용료 등) ① 구청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이용료 등(이하 “이용료”라 한다)을 받을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<p>② (생략)</p> <p><신설></p>	<p>제18조(이용료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문화교실 및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(이하 “수강료”라 한다) 단, 「독서문화진흥법」 제9조에 따라 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한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18조의2(수강료의 감면) ①</u> <u>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<u>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</u>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</p> <p>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</u></p> <p>② <u>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이용자가 감경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.</u></p> <p>1. <u>100분의 50 경감</u></p> <p>가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<u>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</u></p> <p>나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등록된 <u>한부모가족</u></p> <p>다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<u>65세 이상 노인</u></p> <p>2. <u>100분의 20 경감</u></p> <p>가. <u>울산광역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본인</u></p> <p>나. 「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」 제2조제3항에 따른 <u>다자녀가정</u></p> <p>다. 「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」 제2조에 따른 <u>병역명문가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신설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</u></p> <p>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료 감면 신청서와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 <p>제18조의3(수강료의 반환) ①</p> <p>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: 납부한 수강료 전액 2. 도서관의 사정으로 강좌를 운영하지 못하게 된 경우: 납부한 수강료 전액 3. 수강개시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: 납부한 수강료 전액 4.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: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5.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수강을 포기한 경우: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6. 수강개시 후 총 수강시간의 1

현행	개정안
<p>제28조(도서관 문화행사 전개) ① 구청장은 주민의 독서문화발전을 위해 독서강좌, 행사,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/2경과 이후 수강을 포기한 경우: 미반환</u></p> <p>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 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. 이 경우 반환 신청서 제출일을 반환 사유 기준일로 하며,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.</p> <p>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 카드결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.</p> <p>제28조(도서관 문화행사 전개) ① ----- -----<u>독서강좌, 문화교실 및 평생교육</u>-----<u>강좌</u>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【참고자료】

[별표 2]

【현 행】

도서관 이용료 기준(제18조 관련)

1. 복사 및 프린트 수수료

(단위:원)

구분	B5	A4	B4	A3	비고
흑백(칼라)	50(300)	50(300)	100(600)	100(600)	1장당 가격

2. 시설 사용료

(단위:원)

구분	공간	규모(m ²)	사용기준	금액	비고
울산중갓집도서관	창의공간	75	1회 2시간	10,000	
	마루공간	100	1회 2시간	10,000	
	소모임실	25	1회 2시간	10,000	
	문화교실(1)	66/57	1회 2시간	10,000	
	문화교실(2)				
	강의실	108	1회 2시간	10,000	
	악기연습실(1)	19/16	1회 3시간	20,000	
악기연습실(2)					
약숫골도서관	세미나실	127	1회 2시간	10,000	

※ 오전, 오후, 야간 동일함

【개정안】

도서관 이용료 기준(제18조 관련)

1. 복사 및 프린트 수수료

(단위:원)

구분	B5	A4	B4	A3	비고
흑백(칼라)	50(300)	50(300)	100(600)	100(600)	1장당 가격

2. 시설 사용료

(단위:원)

구분	공간	규모(m ²)	사용기준	금액	비고
울산종갓집도서관	창의공간	75	1회 2시간	10,000	
	마루공간	100	1회 2시간	10,000	
	소모임실	25	1회 2시간	10,000	
	문화교실(1) 문화교실(2)	66/57	1회 2시간	10,000	
	강의실	108	1회 2시간	10,000	
	악기연습실(1) 악기연습실(2)	19/16	1회 3시간	20,000	
약숫골도서관	세미나실	127	1회 2시간	10,000	

※ 오전, 오후, 야간 동일함

3. 수강료

구분	기준금액	비고
정기강좌	월 3만원 이하	○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. ○강좌시간 및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.
특별강좌	회 1만원 이하	

근거법규

□ 「도서관법」

제48조(이용료)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「도서관법 시행령」

제34조(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) 공공도서관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
2. 개인연구실·회의실 등 사용료
3. 회원증 발급 수수료
4. 강습·교육 수수료
5. 도서관 입장료(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만 해당한다)

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2항 4호
-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,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이 '수강료 징수 근거'에 관한 선언적 내용으로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에 따라 비용추계서 제출을 생략함.

3. 작성자

- 소 속: 구립도서관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
- 이 름: 박민아
- 연락처: (052)290-4581